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12. 30.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59호

나. 제 출 자 : 김용술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12. 23.

라. 회부일자 : 2019. 12. 24.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경제환경국”을 신설

(안 제3조제2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

나. 조례안 예고 : 2019. 12. 23.～ 12. 27

다. 의견제출 : 서면

○ 제출일자 : 2019. 12. 27

○ 제 출 자 : 민상호(시흥2동 벽산아파트 거주) 외 107명

○ 제출내용 : **상임위원회 축소 운영 요구**

현재 상임위원회 운영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 3개를 폐지 운영해도 무리는 없으나, 의회운영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통합운영 해야 함.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개정(안) 내용 :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 략)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복지건설위원회 가. ~ 마.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위원회 명칭은 소관 사항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통합운영을 요구하는 의견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구성되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석배정, 회기결정,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안건의 소관 상임위 협의 조정 등 의회운영에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처리와 지방의회운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1. 관련법령 (4 ~ 11 page)

2. 서울시 자치구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12 ~ 13 page)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6절 위원회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6조와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3.06., 2014.12.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의회운영위원회 : 6명 이내 <개정 2014.12.30.>
2. 행정재경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08.03.06., 2014.12.30.>
3. 복지건설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08.03.06, 2012.07.17., 2014.12.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개정 2008.03.06.>
   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6.>
   나. 삭제 <2014.12.30.>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11, 2013.1.18>
   라.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08.03.06, 2010.10.11,

2013.1.18, 2019.1.16.>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8>

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8>

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6.>

3. 복지건설위원회 <개정 '08.03.06, 2018.1.15>

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08.03.06, 2010.10.11, 2019.1.16.>

나. 도시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1>

다. 안전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1, 2013.10.31>

라. 삭제 <2019.1.16.>

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③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상임위원의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12.30.>

②보임되었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0.>

②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30.>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개정 2014.12.30.>

④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12.3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0.>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0.>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둔다. <개정 2014.12.30.>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06. 7. 28>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06. 7. 28>

제15조(의사일정) ①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06. 7. 28>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06. 7. 28>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 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06. 7. 28>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신설 '06. 7. 28>

제19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06. 7. 28>

제19조의5(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2.0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시 자치구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

연번	자치구명	상임위원회 현황	총 의원 수
1	강남구	운영위원회(10인) 행정재경위원회(11인) 복지도시위원회(11인)	23인
2	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9인) 행정복지위원회(9인) 건설재정위원회(8인)	18인
3	광진구	의회운영위원회(6인) 기획행정위원회(6인) 복지건설위원회(7인)	14인
4	강북구	운영위원회(6인) 행정보건위원회(5인) 복지건설위원회(7인)	13인
5	강서구	운영위원회(9인) 행정재무위원회(7인) 미래복지위원회(7인) 도시교통위원회(7인)	22인
6	노원구	운영위원회(7인) 행정재경위원회(7인) 보건복지위원회(6인) 도시환경위원회(7인)	21명
7	구로구	운영위원회(7인) 행정기획위원회(8인) 복지건설위원회(7인)	16인
8	관악구	의회운영위원회(7인) 행정재경위원회(7인) 보건복지위원회(7인) 도시건설위원회(7인)	22인
9	금천구	의회운영위원회(5인) 행정재경위원회(4인) 복지건설위원회(5인)	10인
10	도봉구	운영위원회(6인) 행정기획위원회(7인) 복지건설위원회(5인)	13인
11	동대문구	운영위원회(7인) 행정기획위원회(8인) 복지건설위원회(8인)	17인
12	동작구	의회운영위원회(9인) 행정재무위원회(9인) 복지건설위원회(7인)	17인

13	마포구	의회운영위원회(7인)	18인
		행정건설위원회(8인)	
		복지도시위원회(9인)	
14	서대문구	의회운영위원회(7인)	15인
		행정복지위원회(7인)	
		재정건설위원회(7인)	
15	서초구	운영위원회(7인)	15인
		행정복지위원회(7인)	
		재정건설위원회(7인)	
16	성동구	의회운영위원회(7인)	14인
		행정재무위원회(7인)	
		복지건설위원회(6인)	
17	성북구	운영위원회(9인)	22인
		보건복지위원회(7인)	
		도시건설위원회(7인)	
		행정기획위원회(7인)	
18	송파구	운영위원회(8인)	26인
		행정보건위원회(8인)	
		재정복지위원회(8인)	
		도시건설위원회(9인)	
19	양천구	의회운영위원회(7명)	18인
		행정재경위원회(9인)	
		복지건설위원회(8인)	
20	영등포구	운영위원회(8인)	17인
		행정위원회(8인)	
		사회건설위원회(8인)	
21	용산구	운영위원회(5인)	13인
		행정건설위원회(6인)	
		복지도시위원회(6인)	
22	은평구	운영위원회(7인)	19인
		행정복지위원회(9인)	
		재무건설위원회(9인)	
23	종로구	운영위원회(5인)	11인
		행정문화위원회(5인)	
		건설복지위원회(5인)	
24	중구	의회운영위원회(5인)	9인
		행정보건위원회(4인)	
		복지건설위원회(4인)	
25	중랑구	의회운영위원회(7인)	17인
		행정재경위원회(8인)	
		복지건설위원회(8인)	